

의안번호	2212586
의 퇴 인	박수영 의원
회 답 일	2025.11.07.
추 계 번호	25E474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인상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
1	안 제94조의2(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) 신설	○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 대한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 - 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<table><tr><th></th><th>현행</th><th>개정안</th></tr><tr><td>코스피</td><td>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</td><td>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</td></tr><tr><td>코스닥</td><td>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</td><td>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</td></tr><tr><td>코넥스</td><td>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</td><td>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</td></tr></table> -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장법인(K-OTC에서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) 소액주주 기준: (현행) 소유주식 비율 4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미만 →(개정안) 소유주식 비율 4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		현행	개정안	코스피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	코스닥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	코넥스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	
	현행	개정안													
코스피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													
코스닥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													
코넥스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	소유주식 비율 1%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												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4조의2(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(안 제94조의2 신설)
 -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¹⁾에 규정되어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 등을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(안 제94조, 제94조의2, 제104조, 제118조의9)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 인상 시 과세에서 제외되는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가 별도 집계되지 않고 있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개정안 통과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법인의 주식을 50~100억원 보유한 주주이나, 이들이 양도하는 해당 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및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규모 등과 관련한 자료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은 상황
 - 법인(종목) 당 보유금액 통계는 집계된 바 있으나(아래 참고자료), 보유금액과 매도금액 규모 및 구간별 분포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
 -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20% 및 25%로 차등 적용되므로, 해당 주주의 양도차익 규모에 관한 정보 없이 세수효과를 정확히 추계하기 어려움

[표 1] 주식 양도소득세율

(단위: %)

구분			세율
대주주	중소기업	상장·비상장	과표 3억원 이하 20
	중소기업 외	상장·비상장	과표 3억원 초과 25
		1년 미만 보유한 경우	30
그 외	중소기업	상장 및 장외거래·비상장	10
	중소기업 외	상장 및 장외거래·비상장	20

1)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7조(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)

3. 참고자료

□ (참고)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

- 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은 5.3조원이며, 이 중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세액은 2023년 총 2.2조원 수준

[표 2] 연도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세액 추이(귀속 기준)

(단위: 억원)

	2019	2020	2021	2022	2023
전체	32,097	39,378	68,285	50,141	53,267
상장주식	9,777	15,462	20,983	17,261	22,266
비상장주식	22,320	23,916	47,302	32,880	31,000

자료: 국세청, 연도별 국세통계연보

□ (참고)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(12월 결산법인) 주주 보유금액 현황

- 2024년 말일 기준 12월 결산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금액은 총 654조원으로, 이 중 종목별 보유금액이 50~100억원에 해당하는 주주의 보유금액은 10조원으로 집계됨

[표 3]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 주권상장법인 주주 현황: 2024년 12월 31일 기준

(단위: 조원)

종목별 보유금액	코스피(A)	코스닥(B)	전체(A+B)
10억원 미만	273	127	400
10~50억원	21	16	37
50~100억원	4	6	10
100억원 이상	148	59	207
합계	446	208	654

주: 1. 12월 결산법인만을 포함하며, 12월 결산이 아닌 법인 데이터는 포함하지 않음

2. 2024년 12월 30일 종가 기준의 보유금액을 산출한 것이나, 한국예탁결제원은 가격정보를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어 실제와 데이터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3. 종목별 주주의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, 복수의 주식을 가진 경우는 각각 해당하는 구간에 집계됨

자료: 한국예탁결제원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